

의과대학 · 간호대학 생활관 사생수칙

제1조(목적) 이 수칙은 사생들이 입사기간동안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준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활동참여점수) 사생이 사생수칙을 잘 준수하여 기숙사 생활의 모범이 되는 경우 사생점수 30점을 부여하며 차기 입사 시 사생선발점수에 가산하며 별점을 받은 사생의 경우에는 해당 별점만큼을 사생점수에서 감한다.

제3조(호실배정 및 무단이동) 호실의 배정은 교학팀에서 하며, 배정된 방은 사생들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4조(비사생 출입제한) 교학팀의 승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숙사생이 아닌 일반학생의 출입을 제한한다.

제5조(게시와 광고물의 첨부) 기숙사내에 게시와 광고물의 첨부는 사전에 교학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변상) 사생이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이나 기물을 분실,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7조(퇴사) ① 사생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퇴사하여야 한다.

1. 본인의 개인 사정에 따라 퇴사하고자 하는 자
2. 별점이 퇴사 또는 30점 이상인 자

② 퇴사하는 사생은 퇴사조치 당일 깨끗이 청소를 하고 개인짐을 이동하여야 한다. 짐을 옮기지 않고 퇴사 한 경우는 퇴사로 보지 않고 기숙사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짐이 있는 동안까지 입사비를 일일계산하여 청구한다.

제8조(화기 및 청소책임) ① 사생은 각자의 사실내의 화기단속과 청소의 책임을 진다.

② 기숙사 사감은 월1회 사생실의 청소상태를 확인하며 청소상태가 불량한 경우 별표의 별점을 부과한다.(청소상태 점검사항은 방의 정리 정돈 및 청결 여부를 확인)

제9조(취사행위) 기숙사 내에서는 취사행위를 할 수 없다.

제10조(금지행위) 사생은 기숙사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기숙사내에서 음주, 폭행, 도박행위(화투, 카드 등)
2. 전기난로, 전기장판, 전기방석, 곤로, 텔레비전, 밥솥의 반입 또는 사용
3. 외부인에 대한 숙박제공행위
4. 시설물의 무단이동 및 가공
5. 기물의 손상 및 파괴행위
6. 낙서, 부착물의 첨부, 광고물의 무단전시 및 배포
7. 기숙사내의 흡연
8. 그 밖의 사내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제11조(냉장고) ① 음식물관리, 전기안전관리를 위해 개인냉장고는 반입을 허용하지 않기로 한다.

② 공용냉장고 사용자는 음식물에 보관기간을 기록한 스티커를 붙여 보관하며, 기간을 넘은 음식물은 일괄폐기한다.

제12조(벌점) ① 기숙사 사감은 별표 1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소정의 벌점을 부과한다.

1. 벌점부여 : 별표 1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벌점을 부과한다.
 2. 퇴사처분 : 퇴사처분에 해당하는 행위 및 벌점이 30점 이상인 경우
- ② 벌점에 관한 사항은 [별표 1]에 의한다.

제13조(상점) ① 기숙사 사감은 포상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사생에게 상점을 부여한다.

- ② 포상대상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정리상태가 우수한 호실
 2. 공용공간에 대한 자발적 청결활동을 수행한 사생
 3. 기타 공동생활에 있어 기숙사 공동질서 준수에 기여한 사생
- ③ 포상은 학기별로 진행하며 포상범위는 별도로 정한다.

[별표 1] 위반사항에 따른 벌점

위반사항	벌점
1. 범죄행위로 인하여 구속된 자	퇴사
2. 학교로부터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	
3. 대리입사 및 비사생 대동 숙박	
4. 음주, 폭행, 절도, 도박, 화재발생 행위	
5. 파렴치한 행위 등 단체생활 부적격자	
6. 비정상적인 통로를 통한 무단출입	
7. 이성 기숙사 대동 입실	
8. 임의로 호실 변경	
9. 기숙사 내 흡연	15
10. 인터넷을 통해 허위사실 유포, 비방행위	15
11. 사감 및 교직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15
12. 병원의 정책에 반하여 인터넷을 사용하는 경우(확인불가 시 해당 호실 전체)	15
13. 기숙사 비품을 훼손하거나 임의로 개조하는 경우	10
14. 소란 및 소음으로 타 사생의 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	10
15. 전열기(장판, 난로, 방석) 및 취사도구(밥솥, 버너) 기타 인화물질 반입 또는 사용	10
16. 기숙사 내 주식을 취사하는 경우	10
17. 음주 귀사 후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10
18. 애완동물 반입, 사육	10
19. 타인 음식을 무단으로 취식하는 경우, 타인의 세탁물을 임의로 이동하는 경우	10
20. 비사생 대동 입실, 단, 사전에 승인받은 경우 제외	5
21. 공용공간(휴게실, 샤워실, 복도 등) 정리 및 청소 상태 불량, 개인 물건 방치한 경우	5
22. 기숙사 비품을 임의 이동하는 경우	5
23. 낙서, 부착물, 광고물의 무단전시 배포 행위	5
24. 기타 공동생활에 있어 부적절한 행위(사감 및 학생 협의로 결정)	5